

기안용지

분류기호	도경 30312- 186	(전화: 923-8579)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구청장	서울특별시
수신처 보존기간		[인감]	[인감]
시행일자	86. 10.		
보조 기 관	부청장 시정비국장 시정비과장	협조기관	문서통계 1986. 10. 15 통계국
기안책임자	계장 [인감]	이모양 [인감]	발 1986. 10. 18 서울특별시
경유 수신 참조	국안참조	발신명의	
제목	도시계획 시선 (도모) 지적승인		
(제1안)			
수신 내부검재			
제목 같은거			
1. 시선 30312-556 (86. 10. 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 720 (86. 10. 2.)호에 의거 도시계획 시선 (도모) 변경 검정된 동대문구 정랑리동 203-283번지 일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지형도상에 도시계획 사항을 명시코자			
3.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같은바 시행령 제 9조 및 제 5조 규정의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 시선 (도모)을 지적승인 고시코자 합니다.			

직본
 원본
 동대문구
 도자정
 기록
 있음
 해당
 자선
 이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
 인
 인
 인

참조 : 법무 담당관

제목 : 과보 게재의뢰

1. 다음과 같이 과보 게재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게재 구분 : 고시

나. 게재명 : 도시계획 시설 (도로) 지적승인

다. 법적 근거 :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조 및

제 6조

따로붙임 : 고시안 1부.

공.

(제 4 안)

수신 : 서울특별시청

발신 : 구경장

참조 : 시민과장

제목 : 고시번호 부여 및 관인 날인과 발송외뢰

1. 우림구 청량리동 203-283번지 일대의 도시계획 시설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조, 제 6조 규정에 오기

지적승인 및 고시되어 보고로써 따로붙임 서류에 고시번호 부여와 관인날인

및 발송외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과보 게재 의뢰서 1부.

공

작성

원본
중이
도시
4리
인
작성
작성
이



도시계획 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720 (86. 10. 2)호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도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3-283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항을 지형도상에 명시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같은 법 시행

령 제 9조 및 제 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시설 (도로) 지적

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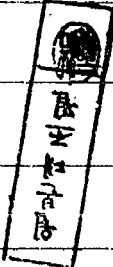
1986. 10. .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시설 (도로) 조서

- 제 1안 아래사항 이기시행 -

나. 승인도면 : 따로붙임 : (생략)



Handwritten signature or initials.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720 (86. 10. 2)호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도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3-283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항을 지형도상에 명시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9조 및 제 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시설 (도로) 지적승인 하얏기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지적소유자와 의행관리인에게 배포합니다.

1986 . 10 .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 시설 (도로) 조서

구분	종류	구분	번호	부원	면적	소재지	종격	비고
기정	중로	1	7	20㎡	520㎡	청량리 203-283	청량리 205-55	
변경	"	"	"	"	"	"	"	선형변경 L=240㎡

나. 승인도면 : 국토부의 (상략)

충대지구 (경량리동 도로)

S: 1/1200

B = 20 M

L = 240 M

지적(임야)도 대조될
도시정비과 직면 지방자치청
지적 2계 성명 이 불
확인 년월 일 1986. 10. 18.
본 도면은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음

사본



번 제

—	기존 계획선
—	변경 계획선

1297

기안용지

(전화: 362-3817)

분류기호 문서번호	치수012100-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결재 1986.10.20 시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86.		
보조 기 관	부시장	협 조 기 관 법무담당관 실사필	문서통제
	상하수과장		1825 인
	치수과장		
기안책임자	용지계장 박기원		
결 수 참 조	각안참조	발 칙 명 의	고시제 268호
제 목	하천점용료 (선박의 운항) 징수지역등급 결정 및 고시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제목 같은전			
1.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준칙 (건설부훈령 제662호)과 서울특별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조례 제1958호)에 선박의 운항에 대한 하천점용료 징수 지역등급을 우미시가 별도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2. 한강내에서의 선박운항에 대한 하천점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고저 아택와 같이 지역등급을 결정하고 별지 고시안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별표 점용료 등 산정기준 구분			